

『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,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
-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시세 세목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, 사업소세 폐지(안 제3조)
- 주민세 통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8조 부터 안 제22조의5)
 -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 함
-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
 - 농업소득세 : 현행 시세 조례 제41조 ~ 제51조
 - 사업소세 : 현행 시세 조례 제95조 ~ 제100조

4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세정과-59(2010.1.6)호 시세조례 표준안(행정안전부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,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세 세목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함
-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, 지방소득세 도입과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세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